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대출약정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귀하

본인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로부터 공제계약대출을 받음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제2호 및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을 확약합니다.

제1조(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계약번호		대출신청인 (계약자)	
대출금액	금	원 (₩)
대출이자율	% * 매 분기별 기준이율과 연동하여 이율변동		
대출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기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의 약정서를 징구하지 않고 1년 단위로 대출상환일을 연장 처리하며 10일 이내에 유선 또는 서면 등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2조(대출기간) 대출기간은 1년 단위로 적용하며, 대출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공제 계약의 종료일까지 1년 단위로 대출기한이 연장됩니다.

제3조(상환방법) 대출원리금은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습니다.

제4조(대출이자) ①대출이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대출일자(이하 “이자납부일”이라 한다)에 납입하는 것으로 하며, 대출일이 해당한 월의 다음 월부터 최초 납입합니다.

②이자납부일이 경과하여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납이자를 대출원금에 합산하고 그 합산된 금액에 대하여 상기의 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③미납이자가 있는 경우 이자납부일마다 재청구합니다.

④대출시행 후 대출이자율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납부합니다.

⑤대출이자의 계산방법 및 이자율 등은 중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5조(기한의 이익 상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회는 서면으로 변제 또는 부금연체의 해소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 경과하면 계약자는 중앙회에 대한 공제계약대출에 관한 일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계약자는 대출금 등 일체의 채무를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이 해지되거나 공제사유가 발생한 때
2. 공제대출금 원리금 합계액이 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때
3.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계약대출
4. 공제계약대출에 관한 약정에 위반한 때
5. 계약이 무효가 된 때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중앙회는 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공제계약대출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